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54,000,000	55,620,000
일반회계	1,438,000,000	43,140,000
특별회계	416,000,000	12,480,000
공기업특별회계	336,200,000	10,086,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4,700,000	4,041,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7,200,000	3,216,000
공영개발특별회계	94,300,000	2,829,000
기타특별회계	79,800,000	2,394,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00,000	120,00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1,561,000	1,246,83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50,000	31,5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8,149,000	544,470
주택사업특별회계	450,000	13,5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125,000	363,75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465,000	73,9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676,42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당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 ③ 동일부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 ④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폐로 인하여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예산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

제 10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및 명시이월 처리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용어 설명>

- | | | |
|--------------------|-----------------|---------------|
| ▶ 국 : 국고보조금 | ▶ 도 : 시 · 도비보조금 | ▶ 조 : 특별조정교부금 |
| ▶ 지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시 : 시 자체재원 | ▶ 채 : 지방채 |
| ▶ 기 : 기금(중앙정부) 보조금 | ▶ 특 : 특별교부세 | |